

「2024년 고양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고양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고양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고양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고양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01.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방식 : 기업에서 先 수행, 後 신청 및 지원(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접수일시 기준

II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양시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지원내용 : 소요비용의 70% 이내 지원(기업당 300만원 한)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조건
해상, 항공운송 (CARGO)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관세 및 부가세, 창고보관비 제외)	1) Incoterms C, D, F 계약조건 2) 수출자 구분 A, B
특송 (EXPRESS)	DHL, FEDEX, EMS 등 특송	3) 물류비를 직접 납부

- 정식수출 물류비 지원 : 2024년 수출신고된 정식수출 물류비 사후지원
 - 수출면장 발급비, 내륙 운송비, 항공(해상) 운송비(유류 할증료 포함), 현지 통관 제비용(운송비 견적서 내 항목 지원)
 - 포워드, 해운사, 항공사 등 이용

<지원금 지급 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국가간 운송료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관세 및 부가세, 창고보관비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WTO 협정 의거 지원 불가)

III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 10.(월) 10:00 ~ 6. 14.(금) 18:00**

※ 모집기업 미달 시 1주일 단위 연장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접수

① 기업회원 로그인(회원가입) : 이지비즈(www.egbiz.or.kr)

② 문서등록 : ①마이페이지 클릭 ⇨ ②나의 서류함 클릭 ⇨ ③지원사업에 필요한 제출서류 (증빙서류·인증서 등) 확인 후 ‘문서등록하기’ 클릭 ⇨ ④파일 업로드

※ 구비서류 등록 시, 향후 he지원사업에도 지속 이용가능

③ 사업신청 : ① ‘이지비즈’ 초기화면 검색창 ⇨ ②사업명 “2024년 고양시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검색 또는 선택 ⇨ ③지원사업 신청 하기 ⇨ ④신청서 작성 ⇨ ⑤구비서류 업로드 ⇨ ⑥접수 완료

④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 서류	1. 신청서[서식1], 청렴서약서[서식2], 정보활용 동의서[서식3], 만족도 설문서[서식4] ※ [서식 1,2,3,4] 작성 및 날인(또는 서명) 후 스캔본(PDF) 첨부 2. 발송내역[서식5] ※ [서식 5] 발송내역 작성 후 엑셀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발급 / 홈텍스) 4. 공장등록증명(본사가 고양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필수) 5.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6. 국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7. 지방세 완납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8. 2023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발급) 9. 신청기업 통장 사본 10. 운송비 증빙서류(물류사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카드영수증 제출시 카드사본 필수)) 11. 수출신고필증(세관 날인 필수) 1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Air Waybill)

IV

선정 및 지원

-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자격 적격여부 검토를 통해 선정 및 지원결정
 - ※ 선정여부는 제출한 이메일로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 지원결정 후 모집 익월 일괄 지급
 - ※ 지원금은 백원 단위 절사하여 지급 (예, 965,540원 → 965,000원)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V

문의처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서일교 과장
 - (연락처) TEL. 031-850-7123 / E-mail. seo33301@gsbsa.or.kr

VI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GBSA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조회기간 : 2023. 01 ~ 12)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 메뉴의 '자사실적정보'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